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의안번호	제 57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11. 14.)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실정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그 외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의 해임 기준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안 제7조)
- 나.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자에 상위법 적용(안 제13조)
- 다.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0조, 제6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2. 9. 29. ~ 2022. 10. 19. (20일간),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¹⁾**을 임원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의 해임기준,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 제3항** : 이사장의 연임기준을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개정하여 이사장의 해임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신설하였음.

- 법 제58조제4항 → 제58조제4항 및 제5항²⁾

- **안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항, 제2항, 제3항 전체를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인용하고자 하는 것임.

1)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법 제60조

조례 현행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례 개정안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법 제60조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 **안 제17조 제2항**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상위법 인용조문을 신설하여 임면 기준을 명확히 함.
-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법 제63조를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20.>
--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장의 해임규정,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